

'청정 소화기'라더니...하론소화기 충전하던 20대 근로자, 급성독성 간염으로 숨져

[중앙일보] 입력 2017.08.24 20:49

경기도 안성의 한 소화기 제조공장에서 소화약제에 중독돼 치료를 받던 20대 근로자가 24일 끝내 숨졌다.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과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0곳에 대한 긴급 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.



HCFC-123 약제를 사용하는 하론소화기의 약제 충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HCFC-123 중독으로 급성독성 간염에 걸려 병원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
[중앙포토]

소화기 제조공장 근로자였던 임모(23)씨는 소화약제 HCFC-123 중독 사고로 병원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. 당시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 한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. HCFC-123은 소위 '청정소화기'로 불리는 하론 소화기의 주요 약제로,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형상이다. 이들은 HCFC-123 약제 충전작업 도중 약제에 노출되면서 급성독성 간염에 걸렸다.

사고 직후 안전보건공단은 HCFC-123 중독발생 경보를 발령했고,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. 또,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불법파견 근로 사실도 확인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.

한편 고용부는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소방청과 함께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곳의 명단을 확보하고 안전 실태점검에 나섰다. 또, 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임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.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"해당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